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이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다)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업무 전반

-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
- 3) 멘토링 및 교육지원, 벤처투자협의회 운영
- 4)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변경·해약
- 5)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관리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1.~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2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간접비	사업비	비고
1,200	240	120	84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51226)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3. 부서 의견

-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5.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위탁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인건비는 대표단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음

나. 사업비는 사업계획의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240	240	240	240
○ 간접비	120		120	120	120	120	600
○ 사업비	840		840	840	840	840	4,200
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도 비	-	-	-	-	-	-	
시 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 임형석(☎480-605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1,200,000	
인 건 비	240,000	· 참여직원 인건비 34,285천원×7명 ≒ 240,000천원 ※ 대표단가×참여기간(12개월)×참여율
간 접 비	120,000	·기관 공통경비
사 업 비	840,000	· 창업지원비 770,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협의회 운영비 등 22,000천원 · 여비, 사무용품비 등 24,000천원 · 연구수당 24,000천원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권 미 영
	팀 장	전 기 훈
	담 당 자	임 형 석 (480-6052)